

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633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5년 4월 21일
제안자 : 교통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동 개정조례안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중교통 적용 및 확대, 자율주행자동차의 심야 및 새벽시간대 원활한 운행 도모, 충전시설 이용편의 증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유상운송사업자의 공영차고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
- 현재 기술실증 중인 심야 및 새벽동행 자율주행 버스의 경우 무상으로 운영되고 있어 차고지 사용 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기술실증 중인 사업자도 차고지 이용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-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대상에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

받고 여객이 탑승하는 기술실증을 시행하는 사업자를 포함(안
제4조제1항제10호)

3. 참고사항 : 생략

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4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운송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 또는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7조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고 여객이 탑승하는 기술실증을 시행하는 사업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정조례안	수정안(위원회안)
<p>제4조(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)</p> <p>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</p> <p>1. ~ 9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4조(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운송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</p>	<p>제4조(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운송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 또는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7조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고 여객이 탑승하는 기술실증을 시행하는 사업자</p>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및 제 10조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운송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 또는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7조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고 여객이 탑승하는 기술실증을 시행하는 사업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